

#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년 4월 7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라. 상정일자: 2026년 4월 16일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미래교육돌봄국장 정 창 호

#### 나. 제안이유

-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직업교육 및 상담 업무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력 양성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사 무 명 :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2) 추진근거
  -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 나)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

3) 위탁사무

- 가) 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과정 기획 및 운영
- 나) 취·창업 상담 및 연계
- 다)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
- 라) 인문·소양 교육 및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 마)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위탁기간 : 2027년 ~ 2029년

5) 소요예산 : 840백만원(도 420, 시 420)

6) 사업개요

- 가) 기 간 : 2027년 ~ 2029년
- 나) 대 상 : 지역 내 여성 구직자, 재직여성, 여성창업 희망자 등
- 다)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 라) 사업내용

- (1) 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과정 기획 및 운영
- (2) 취·창업 상담 및 연계
- (3)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
- (4) 인문·소양 교육 및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 (5)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및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7) 수탁자 선정방식 : 성과평가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가)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 (1) 성과평가 결과 : 탁월(98점)
- (2)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 91점

\*70점 이상으로 적격 판정

8)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6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9) 부서의견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라.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 제29조
- 2)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 본 동의안은

- 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전담시설인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권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 검토 결과,

-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단순 시설관리가 아닌 여성 구직자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를 세밀하게 고려한 전문적 직업훈련 설계가 그 핵심 기능으로, 이에 민간의 풍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민간위탁 운영은 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수탁기관은 다년간의 운영을 통해 견고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그동안 축적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위탁의 타당성 역시 인정됨.
- 또한 사업 내용 측면에서 직업교육, 취·창업 상담 외에 인문소양 교육 및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함으로써, 형식적 일자리 매칭을 넘어 여성의 전체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방향성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재위탁 사안인 만큼 지난 위탁기간의 성과 지표(취업률, 교육만족도 등)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제 운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본 안건과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의 정식 동의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운영되어 온 절차적 미비점이 존재하는바,
- 이번 동의안 제출은 민간위탁사무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 론 요 지

-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나 시민의 참여 없이 집행부 공무원 위주로만 평가단이 구성되어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서비스 품질을 직접 체감하는 시민 만족도 조사 데이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내부 평가만으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위탁 계약 종료일이 상당 기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사업 성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시점에 차기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절차로 판단되어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는 하반기에 성과평가와 동의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정 법인이 수십 년간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탁함에 따라 조직의 매너리즘이나 인력 운영의 고착화 현상이 우려되는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 도입 및 구체적인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부서 차원의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 건수 등 정량적 지표에 치중한 평가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질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서류상 평가는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인 반면, 실제 보고서상에는 구인·구직 미스매치와 취업률 달성 부진 등 실무적 한계가 명시된 점은 부서 자체 평가와 실제 사업 성과 사이의 심각한 괴리를 드러내는 것임.

## 6.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원안가결